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 운영요령

전문개정 2023. 3. 28.

개정 2025. 3. 7.

개정 2025. 11. 4.

개정 2026. 1. 30.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15조 및 서울특별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제8조와 제9조, 서울특별시 약자동행 가치의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한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시 산학연 연구개발 지원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이란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 중 조례 제15조제3항제2호 및 제4호에 의거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연구개발기관”이란 연구개발사업을 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 연구개발기관을 말한다. 모든 기관, 단체 또는 기업(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예비창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동일)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기관, 단체 또는 기업을 말한다.
 -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각 호의 학교의 산학협력단
 - 다. 국공립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산업기술 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 라. 의료법 제3조의3에 해당하는 종합병원
 - 마. 그 밖의 관리지침, 세부사업별 공고 등으로 정하는 기관·단체
3. “주관연구개발기관”이란 연구개발사업 과제의 연구개발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서울시 소재 기관, 단체 또는 기업을 말한다.
4. “공동연구개발기관”이란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을 목적으로 연구개발비 일부를 부담하고 주관연구개발기관과의 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말한다.
5. “실증기관”이란 연구개발사업 과제의 기술개발 및 결과를 실증하는 기관, 단체 등의

장소로, 실증을 위한 장소·공물 제공 및 모니터링 등을 수행하며 실증기관은 해당 과제의 기술개발과 실증에 적정한 기관을 말한다.

6. “연구개발활동”이란 서울시연구개발사업의 수행, 연구지원 및 서울시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 가. 연구개발에 대한 수요를 제출하는 행위
 - 나. 공모에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신청하는 행위
 - 다.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에 참여하는 행위
 - 라. 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행위
 - 마. 제재조치평가단에 참여하는 행위
 - 바. 기타 연구개발 관련 위원회에 참여하는 행위
7. “실증기관 매칭”이란 서울특별시 약자동행 가치의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4조에 근거 운영하는 사업에서 총괄기관이 서면평가 결과 실증매칭 대상기업으로 선정된 과제를 대상으로 실증기관을 매칭하는 것을 의미한다.
8. “연구책임자”라 함은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는 연구자를 말한다.
9. “주관연구책임자”라 주관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어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연구자를 말한다.
10. “공동연구책임자”라 함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업무를 총괄하는 연구자를 말한다.
11. “전체 연구개발기간”이라 함은 연구개발과제 시작일로부터 종료일까지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2. “해당연도 연구개발기간”이라 함은 전체 연구개발기간 내에서 각 연차별(연구개발과제 시작일로부터 12월 단위)로 구분되어지는 기간을 말한다
13. “연구개발비”라 함은 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시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단체·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로 구성된다.
14. “시지원연구개발비”라 함은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서울시가 예산이나 기금 등에서 연구개발기관에게 지급하는 소요경비를 말한다.
15.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이라 함은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로 현금과 현물(해당기관이 보유한 자산을 현금가치로 환산한 금액)로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16. “전문기관”이란 시장이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 대한 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17.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이란 연구개발과제의 도출 및 선정·최종·특별평가와 연차점검, 현장점검, 협약의 변경·해약, 문제과제를 평가하기 위한 위원회를 말한다.
18. “제재조치평가단”이란 문제과제와 기술료, 미납 등의 과제에 대한 제재조치 대상·종류·수준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19. “연구개발과제”란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장이 선정하는 과제를 말한다.
20. “신청과제”란 과제선정평가를 받기 위하여 기관, 단체 또는 기업이 연구개발계획서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 신청한 과제를 말한다.
21. “지원과제”란 연구개발사업의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어 협약이 완료된 과제를 말한다.
22. “신규과제”란 지원 해당년도 과제선정평가에 의해 신규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과제를 말한다.
23. “현장점검”이란 연구개발기관의 재무현황, 평판 등을 방문하여 검토하는 것과 연구개발 기간이 종료 또는 진행 중인 과제의 연구개발 최종(진행) 결과물 확인 및 연구개발비

사용내역 등을 연구개발기관에 방문하여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24. “계속과제”라 함은 전체 연구개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연구개발과제 중 연차점검 등을 통해 계속 수행하기로 확정된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25. “문제과제”란 평가 또는 점검에 따라 “중단” 또는 “극히불량”으로 판정된 과제, 규정 위반 또는 협약 위배 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항에 따른 부정행위 등의 사유에 해당되는 과제를 말한다.
26. “연차점검”이란 협약 시 정한 연차보고일 기준으로 수행과제의 연구개발 실적, 경과 등 연차보고서의 내용 및 연구개발비 사용내역 등에 대한 검토, 확인 및 기술사업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27. “최종평가”란 개발기간 또는 연구개발이 종료된 과제에 대한 과제별 또는 기술분야별 연구개발과제평가단 개최를 통해 개발과제의 수행 과정 및 결과, 연구개발성과 등에 대해 최종적인 평가를 하는 것을 말한다.
28. “특별평가”란 연구개발결과에 대해 연구개발보고서에 대한 검토·심의 등을 거쳐 계속 지원여부, 연구개발과제를 보완·변경·중단하거나 연구개발비를 감액·증액 등을 결정하는 평가절차를 말한다.
29. “기술료”란 서울시 산학연 연구개발 지원사업의 최종평가 결과 “우수” 또는 “보통”인 과제에 대해,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는 권리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전문기관의 장(이하 ‘전문기관장’이라 한다)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30. “지식재산권”이란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및 기타 지식재산에 관하여 법률로 정한 권리 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 관계된 권리를 말한다.
31. “성과활용”이란 연구개발사업 수행으로 발생하는 유·무형적 결과물을 활용하여 기술적·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32. “부정행위”란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하는 혁신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 가.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위조·변조·표절하거나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
 - 나. 혁신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와 혁신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위반한 행위
 - 다. 혁신법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하거나 제3자에게 소유하게 한 행위
 - 라. 혁신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보안대책을 위반하거나 혁신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사항을 누설하거나 유출하는 행위
 - 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거나 이를 수행하는 행위
 - 바.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활동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시장이 정하는 행위
33. “회수금”이라 함은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의 정산결과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을 말한다.
34. “환수금”이라 함은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의 제재사유와 관련된 시지원연구개발비 환수금액을 말한다.
35. “제재부가금”란 제재사유에 귀책사유가 있는 연구개발기관에 대하여 사안의 경중을 고려하여 이미 지급한 시지원연구개발비의 5배의 범위에서 부과되는 금액을 말한다.
36. “종합관리시스템(이하 “PMS”라고 한다.)”이란 연구개발사업 및 연구개발과제에 관한 연구개발정보의 등록·관리·평가 업무와 연구개발기관·연구자 및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의 연구개발과제평가위원 등 서울시연구개발활동의 주체에 관련된 정보의 등

- 록 · 관리 · 분석 업무를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37. “실시간연구개발비관리시스템(이하 “RCMS”라고 한다.)”이란 연구개발비의 투명한 사용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연구개발기관이 직접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을 통하여 연구개발비를 집행, 정산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38. “통합정보시스템”이란 원활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및 연구개발정보의 처리를 위하여 PMS 및 RCMS 등 연구개발사업에 활용하는 시스템을 총칭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3조(산학연 연구개발 범위)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혁신 역량 강화와 산업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며, 매년 세부사업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1. 산학연 협력체계를 통한 연구개발 증진 및 신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사업
2. 기업의 창의적 연구개발 활동 지원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사업
3. 기업,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우수 기술을 활용한 연구개발 지원사업
4.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라 한다) 특화산업 고도화 및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사업
5. 서울시의 4차 산업혁명 선도와 미래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기술 사업화 지원사업
6. 서울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핵심 사업을 뒷받침하는 연구개발 지원사업
7. 민간투자 연계형 연구개발 지원사업
8. 대·중견기업, 글로벌 기업과 스타트업간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한 연구개발 지원사업
9. 기업의 혁신기술 실증 지원사업
10. 서울시에서 대응투자를 하는 정부지원 서울시 대응투자사업
11. 기타 시장이 산학연 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연구개발성과) “유형 · 무형의 연구개발성과”란 다음 각 호의 성과를 말한다.

1. 제품
2. 시설 · 장비
3. 논문
4. 특허 등 지식재산권
5. 혁신법 제1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차보고서, 최종보고서 또는 성과활용보고서의 원문
6. 연구개발과제에서 창출 또는 파생된 기술의 요약정보
7. 생명자원
8. 소프트웨어
9. 화합물(化合物)
10. 신품종
11. 표준
12. 경제적 성과(매출, 고용, 투자 등)
1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서 규정한 성과에 준하는 유형 · 무형의 성과

제2장 기술수요조사 및 공고

제5조(기술수요조사 등) ① 시장은 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산업환경과 기술변화에 부응하

는 공고대상 기술분야의 발굴을 위하여 전문기관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기술환경 변화에 따른 기술동향을 분석하고 전망하기 위한 기술예측조사

2. 기술 분야별 기술수준 및 기술혁신역량조사

3. 지원 과제 발굴을 위한 기술수요조사

4. 기타 시장이 지원분야의 발굴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기술수요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제안하는 기술의 개발목표 및 내용

2. 제안하는 기술의 연구개발 동향 및 파급효과

3. 제안하는 기술의 개발기간

4. 서울시지원 규모 및 형태

③ 제2항에 따른 기술수요조사 항목 이외에도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제안하는 기술의 시장동향 및 규모

2. 제안하는 기술의 연구개발 추진체계

3. 제안하는 기술에 대한 평가 주안점

④ 전문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기술수요조사결과 등을 시행계획의 수립·공고 시 활용할 수 있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공고) ① 시장은 연구개발사업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전문기관 PMS, 홈페이지 등을 통해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고기간을 단축 할 수 있다. 최종선정평가 결과 선정과제가 없는 경우, 재공고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고일시를 30일 보다 단축하여 공고할 수 있다.

1. 연구개발과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목적

나. 지원 내용

다. 지원 기간

2.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려는 연구개발기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신청 자격

나. 선정평가 기준 및 절차

다. 기술료 징수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모 외의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와 이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1. 국가안보 및 사회·경제에 파장이 우려되는 연구개발과제인 경우

2. 서울시가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정부·기관·단체와 체결한 협정·조약 등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와 연구개발기관을 특정한 경우

3. 법령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지정된 경우

4. 재난·재해, 경제여건 악화 등 사회적·경제적으로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서울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이 필요한 경우

5.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기관이 한정되어 공모를 진행할 실익이 없는 경우

③ 시장은 국내외 기술 및 무역 등 산업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

는 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로 지원할 수 있다.

- ④ 시장은 기술수요조사결과 등을 시행계획의 수립·공고 시 활용할 수 있다.

제3장 신규지원과제 신청 및 선정절차

제7조(선정방식) 시장은 연구개발과제 선정방식을 다음 각 호에서와 같이 구분할 수 있다.

1. '정책지정'은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거나 대외 비공개 필요성, 기타 산업정책상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시장이 연구개발과제와 그 연구개발기관을 지정하여 선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2. '지정공모'는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시장 또는 전문기관장이 연구개발과제를 지정하되, 그 연구개발기관은 공모에 의하여 선정하는 방식으로 개발이 필요한 대상기술과 도전적 기술목표(RFP)를 제시한다.
3. '자유공모'는 연구수행자가 자유롭게 개발하고자하는 기술을 제안하고 공모에 의하여 선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4. '품목지정'은 특정품목을 지정하되 제시된 품목 내에서 별도의 기술목표(RFP)는 제시하지 않고 자유공모 방식으로 연구개발과제와 그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제8조(연구개발사업의 신청) ① 제6조에 따라 공고된 연구개발사업에 주관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 포함)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사업에서 정한 서식에 따라 연구개발계획서 및 관련 서식을 종합관리시스템(PMS)에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별 신청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서울시 산학연 연구개발 관리지침(이하 '관리지침'이라 한다)에 따른다.

- ② 제1항의 연구개발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과제의 필요성
2. 연구개발과제의 목표 및 내용
3. 연구개발과제의 추진 전략·방법 및 체계
4.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5. 연구개발비 사용에 대한 개괄적인 계획
6. 연구책임자의 주요 연구실적
7. 연구책임자가 신청 또는 수행중이거나 수행한 국가/서울시 연구개발과제
8. 그 밖에 시장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위해 연구개발계획서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내용

③ 제1항 내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책지정과제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방법 및 연구개발계획서 서식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신청하려는 자는 제9조제2항에 따른 자격조건의 요건검토를 위해 전문기관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 협조 및 신용조회 등에 동의하여야 한다.

제9조(연구개발계획서의 검토·확인 등) ① 전문기관장은 제8조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신청한 기관·단체 또는 기업의 연구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요건검토를 실시하여 최종선정 대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1.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조치 여부

2. 제6조1항제2호가목에 따른 신청 자격의 적합 여부

② 시장은 신청된 연구개발계획서를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제12조의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활용하여 아래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확인토록 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자격
 2. 신청과제의 목표, 내용 및 수행방법
 3. 신청과제 수행능력(연구책임자의 연구 능력 및 연구개발기관의 관리·지원능력 등 포함)
 4. 신청과제의 추진체계 및 연구개발기관의 역할 분담
 5. 과제 수행을 위한 시설확보 정도 및 연구장비 구축 타당성
 6. 연구개발비 계상 및 개발기간의 타당성
 7. 중복성(기 개발·기 지원) 여부
 8. 공지된 기술 및 지식재산권 존재 유무(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중소기업으로서 연구개발기간이 1년 미만인 사업은 제외한다.)
 9. 주관연구개발기관 등의 경영 상태 건전성 및 기업평판
 10. 결과의 활용 가능성 및 파급효과
 11. 보안등급 분류의 타당성(「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해 지정된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과제의 보안과제 분류 여부 검토 포함)
 12. 기타 사업별 특성에 따라 필요한 사항
- ③ 전문기관장은 주관연구개발기관 등이 연구개발계획을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선정된 이후라도 협약이전에 해당사실이 발생 또는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주관연구개발기관 신청자격 및 신청요건이 부적합한 경우
 2. 신청과제가 연구개발사업의 기본 목적이나 공고된 제안요구서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3. 신청된 세부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이 중복성(기지원, 기개발)이 인정된 경우
 4. 기업의 부도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5.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조치를 받은 경우 (접수마감일 전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조치 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만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6.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다만, 과제 신청 접수 마감일 이전 채무불이행 사유를 해소한 경우,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7. 파산·회생절차·개인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
 8. 접수마감일 전 최근 재무제표 부채비율이 1,000% 이상, 자본전액잠식 상태인 경우. 다만, 창업 3년 미만인 중소기업,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한 기업, 시설투자 및 투자기관의 대출형 투자유치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자본잠식 등의 사유로 제12조의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로 인정한 기업은 예외

9.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또는 서울시의 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10.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기술료 납부, 기술료납부계획서 제출, 회수금 및 제재부가금,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11.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12. 연구개발사업 중 동일 세부사업 수행 중인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주관연구책임자(단, 접수 마감일 기준 수행 중인 연구개발사업의 잔여 연구개발기간이 6개월 이내인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주관연구책임자 예외)
 13.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사업공고일 기준 3년 전까지 연구개발사업 5회 선정을 초과한 경우
 14. 그 외 전문기관장이 평가대상에서 제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④ 시장은 상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업별로 추가 또는 예외가 필요한 경우 공고시 또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과제선정평가 등) ① 시장은 지원과제 선정을 위하여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제12조에 따른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하여 과제선정평가를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② 과제 선정평가에 따른 지원대상 선정은 제13조에 따른다. 단, 전문기관장은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평가 결과를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사업별로 최종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최종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평가 결과를 확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다음 각 호의 중소기업에 대하여 우대할 수 있으며, 사업별 우대대상, 우대항목 및 적용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은 관리지침에 따른다.

1.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여성기업
2.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기업
3. 「서울특별시 유망 중소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에 따른 하이서울기업
4. 서울시 신성장 산업거점별 앵커시설 입주기업
5. 기타 시장이 사업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세부사항 및 그 외 추가내용은 관리지침에 따른다.

④ 시장은 과제 선정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과제에 감점을 부여하는 등 불리하게 대우할 수 있다.

1. 연구개발기관, 대표자 또는 연구책임자가 최근 3년 이내에 국가연구개발사업 또는 서울시 연구개발사업에 혁신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유로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단, 연구개발기관이 비영리기관일 경우 대표자가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과제를 불리하게 대우하지 않는다.)
2. 연구개발기관이 최근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경우

제11조(연구개발과제평가위원의 후보단) ① 전문기관장은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위하여 산업기술분류표를 활용하여 연구개발과제평가위원의 후보단(이하 '평가위원 후보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평가위원 후보단은 본인의 신청이나 관계기관의 추천을 받아 모집하며, 신청하거나 추

천받은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자를 평가위원 후보단으로 등록하여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자격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라도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평가위원 후보단으로 등록할 수 있다.

1. 산업계

- 가. 박사학위 소지자
- 나. 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5년(7년) 이상 경력자
- 다. 부장급 또는 이에 상당한 직급 이상인 자

2. 학계 : 2년제 대학 이상에서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

3. 연구계

- 가. 박사학위 소지자
- 나. 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5년(7년) 이상 경력자

4. 공무원 경력자 :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5년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을 갖춘 자

- 5. 공인회계사, 세무사, 기술사, 기술지도사 등 기술·경영전문가
- 6. 기타 해당분야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이거나 해당분야 연구개발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7.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 금융기관의 심사역, 검사역 경력 3년 이상인 자
- 8. 기타 세부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로 하는 자

③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평가위원 후보단에서 제외 등을 할 수 있으며, 자격 상 실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평가위원 후보단에 재등록할 수 있다

- 1. 사망, 이민, 퇴직, 본인고사, 연락두절, 기본정보 미제공 또는 미흡으로 활용이 불가능한 자
 - 2. 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자
 - 3. 위원 등록을 신청할 때 허위사실을 기재한 자
 - 4.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자
 - 5. 피평가자 등에 의한 평가결과 불성실·불공정 평가위원으로 판명된 자
 - 6. 부적절한 발언 등 평가위원으로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자
 - 7. 기타 평가위원으로 활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
- ④ 전문기관장은 평가위원 후보단에 등록된 위원이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및 현장점검 등에 참여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⑤ 수당, 여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는 관리지침에 따른다.

제12조(연구개발과제평가단 구성) ① 전문기관장은 선정평가, 최종평가 및 특별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이하 이 조에서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연구개발과제평가위원의 후보단 중에서 산업기술분류표에 의거 해당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1. 연구개발사업 대상 과제 도출
 - 2. 연구개발계획서, 연차보고서 및 최종보고서에 대한 평가
 - 3. 문제과제, 민원 및 이의신청에 대한 평가
 - 4. 연구시설·장비 도입 및 협약 변경에 관한 사항 심의
 - 5. 기타 연구개발사업의 평가·관리와 관련하여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심의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사항
- ② 전문기관장은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해 별도의 분과위원회, 최종선정위원회, 제재조치평가단, 연구장비도입 평가위원회 등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전문기관장은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운영하는 경우 제11조에 따른 평가위원 후보단을 활용하여야 한다. 이때 전문기관장은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평가(제재조치 포함) 대상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자
 2. 제1호의 사람이 「민법」에 따른 친족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서로 다른 두 건의 연구개발과제의 평가(제재조치 포함)가 동시에 진행될 때 각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자가 그 서로 다른 연구개발과제를 평가하는 관계가 되는 경우의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자
 4. 평가(제재조치 포함) 대상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와 같은 기관에 소속된 사람.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과, 학부(해당 학부에 학과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부서 등 최하위단위 부서에 같이 소속된 사람으로 한정하여 제외할 수 있다.
 - 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 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 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라.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에 따른 연구기관
 5. 해당 서울시 소속 공무원 및 전문기관의 임직원
 6. 그 밖에 평가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평가대상 연구개발과제의 내용에 따라 평가에 필요한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을 연구개발과제평가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
- ⑤ 시장은 최종평가 또는 특별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하는 경우 선정평가에 참여한 사람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
- ⑥ 평가위원 후보단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관리지침에 따른다.

- 제12조의2(최종선정위원회 구성·운영 등)**
- ① 전문기관장은 연구개발과제를 검토 및 심의하려는 때에는 최종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분과위원회 평가점수 및 현장점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② 전문기관장은 최종선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경우 해당 연구개발사업 분과별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해당 분과위원회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개발과제평가위원의 후보단 중에서 추가로 구성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연구개발과제 선정을 위해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실무위원회 참관을 지시할 수 있다.

- 제12조의3(제재조치평가단 구성·운영 등)**
- ① 전문기관장은 제재조치를 하려는 때에는 제재조치평가단을 구성하고, 문제과제 및 기술료 또는 회수금 미납 과제의 제재·환수 심의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② 전문기관장은 제재조치평가단을 구성·운영하는 경우 제11조에 따른 연구개발과제평가위원 후보단을 활용할 수 있다. 이때 전문기관장은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재평가위원단에서 배제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

제13조(지원대상 선정 등) ① 전문기관장은 연구개발계획서 평가결과, 예산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원대상 선정계획을 수립한 후 시장에게 보고하고, 시장의 승인을 받은 후 그 결과를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다만, 시장이 사업별 목적에 따라 민간의 투자유치 심사 등 별도의 절차를 정한 경우에는 이를 따라야 한다.

1. 연구개발기관

2. 연구개발과제명

3. 시지원연구개발비 지원규모 및 개발기간

4. 기타 필요사항

② 선정통보를 받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장은 연구개발계획서 내용 등이 허위로 작성된 경우 등 제9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동일과제가 중복되어 선정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선정의 취소 또는 과제의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장 협약

제14조(연구개발과제협약의 체결) ① 제13조제2항에 따라 선정통보를 받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선정 통보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전문기관장이 정한 협약서 등 관련서류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협약서류를 제출받은 전문기관장은 필요시 협약체결에 필요한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장은 선정 통보일부터 30일 이내에 주관연구개발기관 등의 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연구개발사업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과제 수행 계획(연구개발비의 사용에 대한 개괄적인 계획을 포함)

2. 서울시의 권한·의무 및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자의 권리·의무

3. 그 밖에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관리지침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전문기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협약체결기간 이내에 협약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협약 관련서류 제출 후 전문기관의 서류보완 요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포함)

2.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등의 평가의견을 연구개발계획서에 반영하지 아니한 경우

3. 연구개발비 중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단,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하는 조건으로 협약을 체결한 경우는 예외)

4. 연구개발계획을 허위로 작성하여 선정된 경우

5.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대표자 등이 부도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등의 경영악화로 사업수행 여건이 되지 않는 경우(협약 체결일 기준)

6.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이 참여제한, 의무사항 불이행인 경우(협약 체결일 기준)

7. 사업의 신청자격에 위배되거나 중복 수행됨이 확인된 경우(협약 체결일 기준)

8. 기타 연구개발 수행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 ④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국립·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대학인 경우에는 동 부속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연구개발사업에 따르는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한 경우로 한정한다.
- ⑤ 전문기관장은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전자서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동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는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로 체결할 수 있으며, 최초 과제 선정단계에서 해당 과제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대해 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⑥ 연구개발과제협약의 표준 서식은 관리지침으로 정한다.

제15조(연구개발과제협약의 변경 등) ① 전문기관장은 제14조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주관연구개발기관 장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한 경우 협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협약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경미한 사항은 협약 당사자 간의 통보로 해당 연구개발과제 협약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1. 연구개발과제의 추진 방법의 변경

2.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연구책임자는 제외한다)의 변경

3. 연구개발비 사용에 대한 개괄적인 계획의 변경(간접비 및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증액은 제외한다)

4. 연구개발기관의 연락처, 연구지원을 전담하는 인력(이하 '연구지원인력'이라 한다)의 변경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 변경

5.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효율적인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위하여 시장과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별도로 정한 사항

6. 시장이 특별평가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변경하게 되어 연구개발과제협약의 변경이 필요한 사항

-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통합정보시스템에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등록하는 방법으로 혁신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통보를 할 수 있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약변경 내용이 연구개발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협약의 변경에 관한 세부사항 및 연구개발과제 협약변경사항별 조치는 관리지침으로 정한다

제16조(연구개발과제협약의 해약 등) ① 제14조제2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전문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정으로 인하여 전문기관과 협약을 체결한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특별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과제가 중단된 경우

2.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에서 혁신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가 발생한 경우

3. 혁신법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연구책임자의 국가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참여제한이 확정된 경우

4. 연구개발 환경이 변경되어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책임자가 혁신법 제15조제2항 각 호의 사유로 중단을 요청하여 시장이 인정한 경우

6.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협신법 또는 협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연차점검, 최종평가 등 과제의 평가에 응하지 않는 경우
 8. 사업의 신청자격을 만족하지 않았음이 협약이후 확인된 경우(협약 체결일 기준)
 9. 민간투자를 조건으로 하는 사업에서 주관연구개발기관이 투자금을 조기상환하는 경우 또는 투자기관이 투자금을 회수한 후 일정기한 내 새로운 투자기관을 찾지 못한 경우(다만, 투자기관의 귀책사유로 투자금 상환 또는 회수가 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0.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지원대상을 중소기업으로 규정한 사업에 대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한 경우
 11. 그 밖에 연구개발과제의 중단이 필요한 경우로서 시장이 인정한 경우
- ② 전문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이 해약된 경우에는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특별평가 결과가 ‘중단’으로 확정된 과제는 평가결과의 확정 통보로써 협약 해약의 통지를 갈음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협약이 해약된 경우 시장은 해당기관 또는 해당자에 대해 귀책사유에 따라 제35조에 따른 제재조치 및 환수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장 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관리

- 제17조(시지원연구개발비)** ① 시장은 연구개발사업의 규모, 서울시의 재정사정 등을 감안하여 시지원연구개발비를 일시 또는 분할하여 전문기관장에게 교부할 수 있다.
- ② 전문기관장은 서울시연구개발사업의 추진목적·성격 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비의 지급 횟수, 시기, 지급 조건·방법 등을 정할 수 있다.
- ③ 전문기관장은 주관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 포함), 대표자의 신용상태, 휴폐업 등을 조회하고, 주관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 포함), 대표자 및 연구책임자의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등을 조회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시지원연구개발비 교부를 보류하고, 이행조건이 성립하는 때까지 전문기관장이 시지원연구개발비를 별도 관리할 수 있으며, 이행조건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제16조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 ④ 전문기관장은 RCMS를 통해 시지원연구개발비를 연구개발기관별로 지급할 수 있으며, 일괄 지급하지 않고 집행 시점에 건별로 지급할 수 있다.
- ⑤ 시장은 제2항의 시지원연구개발비를 교부함에 있어 현금이외의 방법으로 지급 또는 사용토록 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관리지침에 따른다.

- 제18조(기관부담연구개발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으로 하여금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이하 ‘기관부담연구개발비’라 한다)를 부담하게 해야 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이하 ‘공기업’이라 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②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현금 또는 현물로 할 수 있으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1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필요한 비용은 현물로 부담하는 것을 원

칙으로 한다.

1. 연구개발비(현금)가 아닌 기관의 자체 재원으로 고용한 소속 연구자가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한 경우 해당 연구자의 인건비
 2. 연구개발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시설·장비의 사용료(비영리 연구기관에 한정하여 기관에서 공인하는 시험분석결과서를 발행하는 시험분석료는 현금 가능) 등
 3. 연구개발기관이 보유 또는 생산·판매하거나 연구개발 과제가 시작되기 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시약·재료 등
 4. 기타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현물부담으로 인정하는 경우
-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연구개발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부담하지 않게 할 수 있다.
1.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성과를 서울시 소유로 하는 경우
 2. 「연구산업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가 시험·분석 등 연구개발서비스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3. 기타 연구개발기관이 창업 7년 이하 기업 또는 스타트업의 스케일업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④ 제1항, 제2항,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비율은 관리지침에 따른다.
- ⑤ 제2항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업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전부 또는 일부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다.

제19조(연구개발비의 산정기준 등) ①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는 서울시가 지원하는 연구개발비와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② 연구개발비는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구성하며, 각 비목별 사용용도 및 계상기준은 관리지침에 따른다.

1. 직접비: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별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있는 비용
 2. 간접비: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별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없는 비용
- ③ 시장은 연구개발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의 범위 내에서 연구개발비의 조성, 비목별 적용기준을 조정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기관은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관리지침상의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계상·사용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른 직접비·간접비의 계상한도 및 인정기준, 비용 정산의 방법·절차
 2. 연구개발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
 3. 연구개발비 사용 계획의 변경을 위하여 사전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 ④ 연구개발기관은 RCMS를 통하여 연구개발비를 사용·관리하여야 한다.

제20조(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관리하는 경우 RCMS에서 연구개발과제마다 별도의 계정을 생성하여 그 계정과 연결된 신용카드

- 또는 직불카드(이하 ‘연구개발비카드’라 한다)를 발급받아야 한다.
-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지출하는 경우 연구개발비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 이체의 형태로 연구개발비를 지출해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비카드의 사용 또는 계좌이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현금을 사용하여 연구개발비를 지출할 수 있다.
 -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지출하는 경우 그 근거가 되는 증명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시장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연구개발비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로 한정한다)의 형태로 연구개발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증명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하도록 할 수 있다.
 -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18조에 따른 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국립·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보조연구기관, 대학 등 비영리기관에서 2개 이상의 연구개발사업을 동시에 수행할 경우에는 하나의 계좌를 사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각 과제별로 계정을 두어 관리하여야 한다.
 - ⑤ 연구개발비의 사용은 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발의에 따라 제14조의 협약 및 관련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만약, 사업 목적 외로 연구개발비를 집행한 경우 제35조에 따라 귀책대상기관 또는 귀책대상자에 대하여 제재조치 및 환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⑥ 연구개발비는 원칙적으로 연구개발기간 내에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기관장이 해당 연구개발사업의 연속적 수행에 필요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⑦ 연구개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연구개발비의 사용 잔액을 차년 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⑧ 전문기관장은 효율적 예산집행을 위하여 통합수탁은행을 지정·운영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비 및 이자의 관리·사용의 세부사항은 관리지침에 따른다.
 - ⑨ 전문기관장은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사용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현장점검을 실시 할 수 있다.

제21조(시지원연구개발비 관리) 전문기관장은 다음 각 호에 의해 회수·환수된 시지원연구개발비에 대하여 매 반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고 시장은 이를 시금고에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

1.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회수금(정산잔액 중 시지원연구개발비 지분)으로 회수된 금액 및 관리에 따른 이자
2. 제35조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로 부과된 제재부가금
3. 제35조제2항에 따른 시지원연구개발비 지분으로 환수된 금액 및 관리에 따른 이자

제6장 보고 및 평가

제22조(연구개발과제 수행 관련 보고서의 세부내용 등) ①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는 매년 해당 연도의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대한 보고서(이하 ‘연차보고서’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기간이 1년 이하의 경우 생략할 수 있다. 연차보고서의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수행내용 및 결과
2. 향후 연구개발과제 수행계획
- ② 연구개발기간이 끝나는 때에는 최종보고서(전체 연구개발기간의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대한 보고서를 말한다. 이하 ‘최종보고서’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

우 해당 연도의 연차보고서는 제출된 것으로 본다. 최종보고서의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2.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 및 수행내용
 3.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결과 및 목표 달성 정도
 4. 연구개발성과 및 관련 분야에 대한 기여 정도
 5. 연구개발성과의 관리 및 활용 계획
 6. 공인인증기관의 시험성적서 등 연구개발결과를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③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는 제1항, 제2항에 따라 연차보고서 및 최종보고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연차보고서: 연차별 연구개발기간 종료일까지
 2. 최종보고서: 전체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후 2개월 이내
- ④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기간이 종료된 이후 시장이 요청하는 경우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에 대한 보고서(이하 ‘성과활용보고서’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성과활용보고서의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개발성과의 구체적 내용 및 활용 실적
 2. 연구개발성과의 과학적·기술적·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
 3. 그 밖에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활용 등 성과활용보고서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연구개발성과
- ⑤ 연차보고서·최종보고서 및 성과활용보고서의 표준 서식은 관리지침으로 정한다.
- ⑥ 시장은 연구개발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고의 시기 및 형태를 달리 적용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관리지침에 따른다.

제23조(연구개발과제의 평가 등) ① 시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 연구개발성과 등에 대하여 연차점검 및 최종평가(연구개발기간이 끝나는 때에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평가사항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 및 수행 내용
 2.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결과 및 목표 달성 정도
 3. 연구개발성과 및 관련 분야에 대한 기여 정도
 4. 연구개발성과의 관리 및 활용 계획
- ② 전문기관장은 최종평가의 결과를 서울시 중소기업연구개발 관리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급을 분류할 수 있다. 다만,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이 부적절하고 연구개발성과가 그 수행계획에 비하여 매우 미흡한 경우에는 “극히불량” 등급을 정하여 그 등급으로 최종평가의 결과를 평가하도록 분류해야 한다.
- ③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나 시장이 평가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 등의 경우 최종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혁신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가 보안과제로 분류된 경우
 2. 대상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시장이 평가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가 1억원 이하인 경우

제24조(연구개발과제의 평가에 따른 조치) ① 시장은 제23조 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특별평가 결과의 의해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중단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중단하려면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과제의 중단 등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미리 통지해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된 연구개발과제의 중단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통지내용의 재검토를 요청하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④ 시장은 시장은 최종평가 결과 “우수”로 평가된 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을 대상으로 포상을 할 수 있으며, 성과의 고도화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후속연구개발과제로 추가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평가 결과의 통보) ① 전문기관장은 확정된 평가 결과를 다음 각 호의 해당 연구개발기관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선정평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신청한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
2. 최종평가 · 특별평가: 평가를 받은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
- ② 전문기관장은 평가 결과를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26조(이의신청)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자는 전문기관장에게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관리지침 상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전문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 · 명칭 및 주소
2.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
3. 통보된 평가 결과
4.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제27조(특별평가의 실시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평가(이하 ‘특별평가’라 한다)를 거쳐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 목표, 연구책임자 등을 변경하거나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평가의 실시를 통보받은 연구개발기관은 평가의 대상이 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그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연구개발비를 추가적으로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에서 국가, 서울시, 타 지자체 등의 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가 발생한 경우
2. 연구책임자의 국가, 서울시, 타지자체 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참여제한이 확정된 경우
3. 연구개발 환경이 변경되어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전문기관장이 제3항에 따른 요청을 인정한 경우
5.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이 요령 또는 협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현장점검’ 결과 ‘특별평가 대상’으로 의결한 경우
7. 그 밖에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이 필요한 경우로서 시장이 정하는 경우
- ② 전문기관장은 특별평가를 실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1. 특별평가 실시 시기
 2. 특별평가 실시 사유

3. 소명 자료의 제출 시한
4. 특별평가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과제가 변경되거나 중단될 수 있다는 사실
- ③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 목표 또는 연구책임자 등의 변경을 요청하거나 연구개발과제의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관리지침상의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전문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연구개발 환경이 변경되었거나 연구개발과제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여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변경 및 중단 절차는 관리지침으로 정한다.
-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문기관장은 현장점검 등을 통해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의 사유를 명확하게 확인한 경우에는 특별평가를 생략하고 연구개발과제의 중단, 제재조치 등 필요한 사후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장 연구개발비의 정산

제28조(연구개발비 사용내역 보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별로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을 전문기관장에게 연구개발기간 종료일까지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 기관의 장은 RCMS를 통하여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을 등록하는 방법으로 보고할 수 있다.

- 제29조(연구개발비의 정산 등)**
- ①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을 협약 기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와 사용실적(혁신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에 따른 이자 총액과 그 사용용도와 사용실적을 포함한다)을 적어 전문기관(전문 기관이 지정한 회계기관 포함)에 제출해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전문기관(전문기관이 지정한 회계기관 포함)의 장은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에 대한 적정성 여부 등을 확인·검토해야만 한다.
 - ③ 연구개발비 정산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불인정하며, 연구개발비 정산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관리지침에 따른다.
 1. 협약기간 이전 또는 협약기간 종료 후 집행한 금액(별도 인정한 경우 제외)
 2.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이 없거나 다른 과제나 사업에 전용한 경우
 3. 연구개발비 집행내역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증빙이 미비한 경우
 4. RCMS에 입력하지 않고 집행한 경우
 5. 전문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는 연구개발비 변경 또는 사용에 대해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행한 경우
 6.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기로 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물을 부담하지 않은 경우에 그 해당 금액
 7. 관리지침의 연구개발비 불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④ 전문기관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전문기관이 지정한 회계기관 포함)의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및 정산결과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 ⑤ 전문기관장은 제2항부터 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정산결과를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⑥ 전문기관장은 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정산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사용용도와 사용

기준을 위반하여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비를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⑦ 전문기관장은 제2항부터 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정산 결과, 제3항의 불인정 금액 및 다음 각 호에 대해 시지원연구개발비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할 수 있다.

1. 직접비 사용 잔액
2.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비를 사용한 경우, 위반하여 사용한 연구개발비 전액
3. 직접비 집행비율이 50% 이하인 연구개발과제의 간접비 집행비율이 직접비 집행비율을 초과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boxed{\text{간접비 총액 } X (\text{간접비 집행비율} - \text{직접비 집행비율})}$$

4. 연구개발과제협약이 해약된 경우, 간접비 사용 잔액
5. 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간접비 사용 잔액
- ⑧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제1항의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자료와 제20조에 따른 장부를 협약기간 종료일 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전문기관이 지정한 회계기관 포함)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⑨ 전문기관(전문기관이 지정한 회계기관 포함)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7장(연구시설·장비비 사용의 특례)에 따라 통합관리하는 연구시설·장비비에 대해서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산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제9항에 따라 증빙 자료를 갖추어야 하고, 전문기관(전문기관이 지정한 회계기관 포함)의 요청 시 제출하여야 한다.
- ⑩ 전문기관장은 정산 완료 및 정산 지연여부 등의 정산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장 연구개발성과의 귀속 및 활용

제30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 ① 연구개발성과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 기관이 해당 연구자로부터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여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관리지침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성과의 유형, 연구개발과제에의 참여 유형과 비중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연구자가 소유하거나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그 연구개발성과의 소유에 관한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각자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다.
2.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소유비율을 정하되, 연구개발기관 간의 협의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소유비율 및 연구개발성과실시(연구개발성과를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그 협의에 따른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연구개발성과물을 서울시의 소유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협약에 해당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1.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국외에 소재한 경우
3. 기타 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서울시 소유 연구개발성과를 전문기관 또는 연구개발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 ⑤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로서 특히 등 지식재산권을 국내에 출원하려면 특히 출원서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1. 연구개발과제의 명칭
 2. 연구개발과제의 식별을 위하여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부여하는 연구개발과제 번호
 3. 연구개발과제를 지원한 서울시, 전문기관

- 제31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 ① 시장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제22조에 따라 최종 보고서 제출 시 연구개발성과의 활용계획을 함께 제출토록 할 수 있다.
- ② 제23조에 따른 최종평가결과 "우수" 또는 "보통"으로 평가된 연구개발과제 주관연구개발기관 장은 최종평가결과를 통보받은 연도 다음해부터 5년간 매년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실적(이하 '성과활용보고서'라 한다.)을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실적 제출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할 수 있으며, 필요시 최종평가결과 "미흡" 또는 "극히불량"과제에 대해서도 해당 주관연구개발기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전문기관장으로 하여금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성과활용보고서를 토대로 매년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분석을 실시토록 할 수 있다.
- ④ 시장은 전문기관장으로 하여금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연구개발성과 검증 및 "미흡" 또는 "극히불량" 사유 분석 등을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토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현장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 ⑤ 전문기관장은 제3항 및 제4항의 성과분석 및 현장점검 실시 결과를 종합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⑥ 시장은 연구개발성과물에 대한 성과분석 및 현장점검 결과에 따라 성과등급을 부여할 수 있으며, 성과등급의 활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관리지침에 따른다.
- ⑦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에 대해 별도의 기업과 실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때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의 책임과 의무는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9장 기술료의 징수 및 사후관리

- 제32조(기술료의 징수)** ① 전문기관장은 제23조에 따라 최종평가 결과 완료로 평가된 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주관연구개발기관 등(단,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이 아닌 경우 사업에 참여한 기업)으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해야 한다. 다만, 아래 각 호의 경우 기술료 납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해당 연구개발성과가 국가안보와 관련된 경우
2. 사회적·경제적으로 긴급한 상황이 연구개발기관에 발생한 경우
3. 연구개발기관의 경영이 악화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납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다음 조례에 의거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기술료를 미징수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제17조, 제18조

2. 서울특별시 약자동행 가치의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4조

③ 기술료 징수, 감경 또는 면제 등에 관한 기준은 관리지침에 따른다.

제33조(기술료의 사용 및 관리) ① 시장은 제32조의 요령에 따라 징수된 기술료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1. 연구개발사업에 재투자

2. 연구개발사업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전산체계 구축 운영

3. 사업성과의 활용 촉진을 위한 사후관리와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을 위한 사업

4. 과제 참여기관 또는 과제참여자에 대한 사업화 장려비 지급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전문기관장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기술료의 징수·관리·집행을 위한 별도의 관리규정을 제정·운용할 수 있으며, 매년 기술료 징수실적 및 집행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4조(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이용) ① 시장은 원활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및 연구 개발정보의 처리를 위하여 PMS 및 RCMS 등 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시스템(이하 '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서울시연구개발사업 및 연구개발과제에 관한 연구개발정보의 등록·관리·평가 업무

2. 연구개발비의 지급·정산 및 연구개발비 집행 관련 정보의 처리·분석 업무

3. 연구개발기관·연구자 및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연구개발과제평가위원 등 서울시연구 개발활동의 주체에 관련된 정보의 등록·관리·분석 업무

③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통합정보시스템에 변경된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가. 연구개발사업·연구개발과제 등 연구개발 수행에 관한 정보

나. 연구개발기관·연구자 등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주체에 관한 정보

다. 연구개발성과의 명칭·종류·소유기관 등 연구개발성과에 관한 정보

제35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에 대하여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거나 이미 지급한 서울시 연구개발비의 5배의 범위에서 제재부 가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23조에 따른 평가 결과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과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2.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협약에 따른 의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특별평가에 따라 연구개발과제가 변경 또는 중단된 경우

3.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위조·변조·표절하거나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한 경우

4. 제3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하거나 제3자에게 소유하게 한 경우

5. 협약에 따른 보안대책을 위반하거나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사항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거나 수행한 경우

7. 혁신법 제31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국가연구개발활동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8.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9.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2조에 따른 기술료의 일부 또는 수익의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10.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9조에 따른 연구개발비 회수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11. 연구개발비 지출 증명자료를 위조·변조하여 연구개발비 사용의 건전성을 해치는 행위
12. 연구개발과제별 및 연도별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의 거짓 보고로 연구개발비 사용의 건전성을 해치는 행위
13.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개발 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14.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 과제의 수행을 포기하면서 시지원연구개발비를 반납하지 않은 경우
15.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서, 연차보고서, 최종보고서, 성과활용보고서 등 협약에 정한 제출의무가 있는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16. 협약에서 제출하기로 한 기술료 제반자료 등을 위·변조한 경우
17. 협약에서 부담하기로 한 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은 경우
18. 민간투자유치를 의무화하는 사업에서 투자계약이 변경·무효화·양도된 경우
 - . 그 밖에 협약을 위반한 경우로서 시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따르지 않아 더이상 연구개발 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와 별도로 연구개발기관이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연구개발비를 사용한 경우 해당 연구개발기관을 대상으로 그 금액중 시지원연구개발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환수(이하 ‘시지원연구개발비 환수’라 한다)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제재조치평가단이 검토한 결과를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제재조치의 내용 등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1. 제재대상자
 2. 제재대상자의 소속 기관의 장
 3. 전문기관장
- ④ 시장은 제3항의 결과에 따라 제재조치 및 환수조치가 결정된 때에는 관련내용을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한다.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공개해야 하는 제재조치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간이 5년 이상인 참여제한
 2. 부과금액이 이미 지급한 시지원연구개발비의 3배 이상인 제재부가금
- ⑤ 전문기관장은 중앙행정기관 또는 관련기관으로부터 제재조치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서울시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 할 수 있다.
- ⑥ 시장은 제1항 제10호, 제11호 또는 제16호의 사유로 참여제한을 받은 자가 해당 금액을 납부하는 등 참여제한 사유를 해소한 경우, 참여제한을 해제 할 수 있다.
- ⑦ 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 조치나 제재부가금 부과조치는 병과할 수 있다.
- ⑧ 제2항에 따라 시지원연구개발비를 환수할 경우 전문기관장은 해당 과제에 이미 교부된 시지원연구개발비의 범위에서 이에 상당하는 현금을 주관연구개발기관 등으로부터 환수할 수 있다. 환수방법 및 절차의 세부사항은 관리지침에 따른다.
- ⑨ 전문기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재부가금 및 시지원연구개발비를 환수할 경우

에는 현금으로 환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⑩ 시장은 제재조치를 하거나 연구개발비를 환수하는 때에는 제재사유의 중대성, 위반행위의 고의 유무, 위반 횟수, 연구개발과제의 진행 정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⑪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제재부가금 부과 및 환수 통보를 받은 연구개발기관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전문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며, 시장은 납부의무자에게 경영악화, 천재지변, 재해 또는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제재부가금 또는 시지원연구개발비 환수의 부과금액 전액을 한꺼번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과금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하거나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⑫ 시장은 시지원연구개발비 환수조치 및 제재부가금 부과조치를 받은 자가 환수금 또는 제재부가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15일 이내에 아래 각 호의 사항이 작성된 독촉장을 발급하여 송부하여야 하며, 독촉장에 기재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 협약 시 발급 받은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을 행사 및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법적 대응을 진행할 수 있다.

1. 체납액

2. 납부기한(독촉장을 발급한 날부터 10일 이내)

3. 납부장소

4.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

- ⑬ 시장, 전문기관장은 제1항 각 호의 행위가 범죄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형사고소·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6조(제재조치의 절차 및 재검토 요청 등) ① 시장은 제35조에 따라 제재조치를 하려는 때에는 제재대상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제재조치평가단(이하 이 조에서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제재조치의 필요성, 제재조치의 종류·수준 등 제재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과제가 외부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재산적 가치에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거나 국가안보를 위하여 보안이 필요한 연구개발과제를 보안과제로 분류된 경우에는 평가단을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기관장은 제재조치평가단을 구성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1. 제재대상자와 「민법」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2. 제재 대상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자

3. 제재대상자와 같은 기관·단체에 소속된 사람

4. 그 밖에 평가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 ② 시장은 평가단이 검토한 결과를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제재조치의 내용 등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1. 제재대상자

2. 제재대상자의 소속 기관의 장

-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된 제재조치의 내용(이하 이 조에서 '통지내용'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제재대상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시장에게 통지내용의 재검토를 요청하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라 의견을 받은 시장은 재검토를 실시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검토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3항의 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재조치의 종류와 수준을 결정하여야 한다.

-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른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제2항 각 호의 사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⑥ 시장은 제4항에 따른 결정의 내용을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공개하여야 한다.
- ⑦ 평가단과 위원회의 구성·운영, 제3항에 따른 검토의 절차, 제6항에 따른 등록·공개 범위는 관리지침으로 정한다.

제 10 장 추진체계

제37조(전문기관) ① 시장은 연구개발사업을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및 사후관리를 위해 협약에 의거 전문기관을 둘 수 있다.

1. 사업 계획수립 지원
2. 기술수요조사 실시
3. 기술예측조사, 기술수준조사, 기술혁신역량조사 등 사전조사
4. 특허 및 표준화 동향조사, 경제적 타당성 분석 및 수행과제 발굴
5. 연구개발계획서의 접수, 신청과제 및 지원과제에 대한 자격 검토, 신용조회 등
6. 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및 중복여부 검토·확인
7. 과제 선정평가, 최종평가, 문제과제 처리 등을 위한 연구개발과제평가단 구성·운영
8. 연구개발사업 평가결과 통보 및 수정 연구개발계획서 검토
9. 연구개발사업 협약체결, 시지원연구개발비 지급 및 협약변경 사항의 승인
10. 연구개발비 사용내역 검토 및 정산, 회수금, 제재부가금 및 환수금의 회수, 기술료의 징수, 관리 및 사용
11. 중단과제, 극히불량 과제 및 기술료, 회수금 미납 과제 등의 제재조치·환수를 위한 제재조치평가단 구성·운영
12. 제재조치평가단 결과(참여제한, 제재부가금, 환수금 등)보고 및 확정 통보
13. 성과분석, 성과활용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한 사후관리
14. 연구개발사업의 보안 및 연구윤리, 연구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활동 지원 및 조치에 관한 사항
15. 통합정보시스템 구축·관리·운영
16. 부가세 포함 3천만원 이상의 연구장비 도입 및 등록관리에 관한 사항
17. 기타 연구개발사업 수행을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 전문기관장은 연구개발사업의 정체성 및 차별성 확보, 기술수요조사, 조사결과의 종합분석 등 사업의 장단기 방향설정, 정책평가사업에 대한 자문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운영 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장은 제1항제6호의 업무를 대행할 경우에는 연구개발사업의 중복여부 확인을 위한 중복성 검토 시 내부 전문가를 지정할 수 있다.

제38조(주관연구개발기관) ①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사업을 주관하여 수행중 또는 수행한 기관, 단체 또는 기업을 말하며,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갖는다.

1. 연구개발계획서 등 신청 서류 제출
2. 연구개발사업의 협약체결 및 수행에 대한 종합관리
3. 연구개발사업 수행에 필요한 연구인력, 시설 및 행정 지원

4.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기로 한 연구개발비의 부담
 5. 연구개발비의 적법한 집행 및 관리
 6. 연구개발사업의 연차보고서, 최종보고서 제출
 7. 연구개발사업 성과의 활용, 성과활용보고서 및 제31조제4항에 따른 현장점검 참여 등 자료 제출
 8. 연구개발사업 참여연구원에 대한 성과금 배분(해당사업의 경우)
 9. 기술료의 납부
 10. 기술료의 사용, 관리 및 결과의 보고(해당사업의 경우)
 11. 연구개발과제의 보안관리
 12. 연구윤리 준수
 13.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에 따라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한 경우, 전문기관에 해당 사실 통보(중소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아닐 경우 적용 없음)
 14. 연구시설·장비 등록, 활용, 관리 및 관련자료의 제공
 15. 회생, 파산, 부정행위 등 문제 발생 시 전문기관에 통보
 16.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전조치 이행실적 제출
 17. 기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분석·평가 등을 위한 자료 제출
- ②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자격 및 형태 등 세부사항은 사업별 공고 또는 관리지침에 따른다.

제39조(공동연구개발기관) ① 해당 연구개발사업의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수행 중 또는 수행한 공동연구개발기관은 제38조제1항의 주관연구개발기관과 동등한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②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유무, 자격 및 형태 등 세부사항은 사업별 공고 또는 관리지침에 따른다

제 11 장 보칙

제40조(이의신청) ①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호, 제2호, 제4호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3호는 10일 이내에(이하 동일), 제5호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이하 동일)에 전문관장에게 주관연구개발기관 장 명의의 공문과 신청인 인적사항, 결과통보일, 평가결과(제5호의 경우 제재조치평가단 심의결과), 이의신청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서면으로 한 번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제10조에 따른 과제선정평가 결과
 2. 제23조, 제27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평가 결과
 3. 제29조에 따른 연구개발비 정산 결과
 4. 제32조에 따른 기술료 징수
 5. 제21조 및 제35조에 따른 시지원연구개발비 환수조치 및 제재조치
- ② 전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필요한 경우 평가단을 구성·개최하여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전문관장은 제2항에 따른 결과를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시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1조(자료제출 및 조사) ① 전문기관장은 사업계획, 연차보고 및 최종보고 검토, 사후

관리 등을 위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 소속직원 또는 외부전문가를 활용하여 관련내용을 조사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 및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시장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설명하여야 한다.

제42조(연구개발사업의 승계) ① 제14조에 따라 전문기관과 협약을 체결한 연구개발기관(기업에 한정한다)은 연구개발사업의 수행기간 중 기업의 전부 또는 연구개발 관련 사업부분을 증여·상속·양도 또는 분할·합병한 경우에는 증여·상속·양수 받은 기업, 신설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기업이 연구개발사업을 승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의 승계는 전문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3조(연구윤리의 확보) ①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및 단체, 연구자는 연구윤리에 위배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문기관 또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연구부정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4조(신용조회 등) ① 전문기관장은 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대표자의 재무건전성 확인을 위해 신용정보업 회사로부터 신용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단, 개인신용정보 수집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전문기관 등으로 하여금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사용 및 관리의 적정성 파악을 위해 연구개발비 사용 내역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도록 할 수 있다.

제45조(연구개발기술의 보안) ① 시장은 보안을 위하여 부속요령을 제정할 수 있으며, 신규사업자 선정절차, 관리 등을 부속요령에 의거하여 달리 적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국외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연구개발성과는 지식재산권의 설정 등을 통하여 보호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첨단산업기술이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요 정보 및 결과물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소속 연구자가 준수해야 하는 보안 관련 의무사항

2. 과제수행관련 정보·연구시설 및 연구관리시스템에 대한 보안조치 사항

3. 과제수행내용 및 수행결과의 대외 발표 시 보안조치

4. 연구개발성과의 침해·유출·누설·분석·훼손·도난 및 연구개발성과를 유통·관리·보존하는 시스템의 유출·파손·파괴에 해당하는 보안사고의 예방·대응·조사·재발방지 방안

5. 참여연구원의 기술보호교육 참여

6.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에 소재한 기관·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의 보안관리 방안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 규정한 사항이 포함된 보안관리규정 제정·운영 방안

⑤ 시장은 사업의 보안실태에 대하여 점검하고 개선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국가안보·공익 또는 첨단기술과 관련된 중요 사업에 대해서는 국관계기관과 협동으로 연구개발기관의 보안실태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다.

제46조(지도·감독) 시장은 전문기관장에게 연구개발사업의 운영·관리에 관계되는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연구개발사업의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를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47조(관리지침 제정·운영) 시장은 이 요령에 따른 관리지침을 두어 운영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장은 이 요령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제3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별 또는 사업관리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관리지침을 제·개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23년 3월 1일 이후 협약 체결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 이전에 종전의 요령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부 칙(2025. 3. 7.)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25년 3월 7일 이후 협약 체결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 이전에 종전의 요령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부 칙(2025. 11. 4.)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25년 11월 4일 이후 협약 체결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 이전에 종전의 요령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부 칙(2026. 1. 30.)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26년 1월 30일 이후 협약 체결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 이전에 종전의 요령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